탄원서

인사·이권 청탁 관련 별도 알선수재

사건번호	2026도15591
피고인	김건희
담당 법원·재판부	대법원 제2부
재판 단계	상고심

1. 탄원의 취지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재판부께

공직과 인사에 관한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면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 무게를 인정하면서도 김건희 피고인에게 인정되는 범위가 물품마다 정확히 가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탄원을 올립니다.

이미 항소심은 일부 물품의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유죄로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행위마다 다른 결론이 가능한 만큼, 법률이 허용하는 상고심의 심리에서 그 구별의 이유를 끝까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원심이 인정한 중대한 책임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1심은 징역 7년을, 2026년 9월 22일 항소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일부 물품에 관한 대가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면서도 나머지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저는 그 유죄 판단을 가볍게 평가하거나 선고가 중하다는 감정만으로 뒤집어 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일부 무죄로 변경된 사실은 모든 물품수수 행위를 동일하게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의 법률적 구분이 정확하고 일관되었는지 마지막까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사건에 관여한 경위와 실제 실행 행위

항소심은 사업 관련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에 대하여 평소 친분을 과시했다는 사정만으로 묵시적 청탁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세한도 복제품 역시 인사 청탁과 결부된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변경했습니다. 반면 다른 귀금속·그림 등 수수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물품별로 법률 적용의 결과가 달라졌다는 사실은 그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무죄 부분을 다른 혐의에 대한 면책 사유로 삼지 않되, 남은 유죄 부분에도 동일하게 엄격한 대가관계 판단 기준이 적용됐는지 살펴주시기를 청합니다.

4. 피고인의 실제 지시와 그 결과

알선수재죄는 알선의 명목과 금품수수 사이의 대가관계를 검토하는 범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인사나 사업 결과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합니다. 그렇기에 더욱 청탁의 내용과 금품 제공의 전후 경위, 피고인이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법률 기준에 따라 판단되기를 바랍니다.

업무상 친분과 부탁을 주고받은 사실, 고가 물품의 이전, 특정한 알선의 대가로 받았다는 인식은 서로 이어질 수 있지만 자동으로 같은 뜻은 아닙니다. 원심이 그러한 연결을 판단한 법률적 근거에 누락이나 오해가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알선의 대가관계는 반드시 물품과 개별 청탁이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더라도 전체 사정에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전체 사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피고인이 어떤 알선을 의식했는지가 이유 있게 설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피고인에게 유리한 개별 사정

항소심이 무죄로 본 손목시계 부분은 구매대행이라는 피고인 측 설명을 배제하기 어렵고 알선의 대가라는 인식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되었습니다. 세한도 복제품 역시 홍보 목적의 제공이라는 사정이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물품별 경위를 개별적으로 따진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죄로 유지된 금품까지 같은 근거로 무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디 검사와 피고인 측이 각각 다투는 부분의 법률적 기준을 정확히 적용해 주십시오.

6. 피고인의 진술과 사건 이후 태도

항소심은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이 사적인 청탁과 연결됐다는 점, 공여자의 기대를 피고인이 알았다고 볼 사정, 수사 이후 일부 물품을 반환한 경위 등을 불리하게 평가했다고 보도됐습니다. 반면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처신을 자책한 점, 금품을 먼저 요구하거나 알선에 적극적으로 나선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이미 고려했습니다.

이처럼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고 유리한 사정을 함께 판단했습니다. 저는 확인되지 않은 반성이나 미담을 새로 보태 감형을 부탁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법률상 유죄 범위가 바뀌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변화가 원심이 정한 형에도 정확히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7. 개인별 양형 사정을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소심은 시계·세한도 복제품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다른 고가 귀금속과 물품 관련 혐의는 유죄로 유지했고, 이를 종합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유리한 사실과 불리한 사실이 함께 존재함을 알고 있습니다.

항소심이 이미 일부 혐의 인정과 처신에 대한 자책, 금품을 먼저 요구하거나 적극적인 알선을 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감경 요소로 고려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미담을 덧붙이지 않고, 상고심에서 유죄 범위를 바꿀 법률상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그 결과가 형의 판단에도 정당하게 반영되기를 부탁드립니다.

8. 법률에 따른 공정하고 균형 있는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상고심은 원심의 모든 사실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 선고된 징역 5년에 대해서는 단순한 형량 불만이나 사실오인 주장만으로 상고 이유를 구성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의 제한을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알선수재의 대상 직무와 대가성 판단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상 잘못이 있는지는 구별해 심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죄로 변경된 손목시계와 세한도 부분, 유죄로 유지된 나머지 물품의 판단 기준이 일관되는지 살펴 주시기를 청합니다.

9. 결어

존경하는 재판부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항소심이 무죄로 변경한 두 부분과 유죄를 유지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법률과 기록에 따라 공정하게 살펴주십시오.

김건희 피고인이 실제로 인식하고 관여한 범위를 넘어선 책임이 더해지지 않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균형 있는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탄원합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탄원인 성명: _____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서명 또는 인: _____

참고자료

사건 경과 및 공개 판단

1. 연합뉴스 | 인사·이권 알선수재 2심 선고 및 유·무죄 판단

2026. 9. 22. · 징역 7년에서 5년으로 변경; 시계·세한도 일부 무죄와 반클리프 목걸이 등 유죄 및 불리·유리한 양형 사정.

https://www.yna.co.kr/view/AKR20260922138351004

2. 오마이뉴스 | 금품 유형별 유·무죄 결과 정리

2026. 9. 22. · 목걸이·귀금속·그림·가방 등 유죄 부분과 손목시계·세한도 복제품 무죄 부분의 구분.

https://www.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3269526

3. 연합뉴스 | 특검의 별도 알선수재 항소심 상고

2026. 9. 28. · 특검·피고인 측 쌍방 상고와 법률상 쟁점 보도.

https://www.yna.co.kr/view/AKR20260928155600004

4. 뉴스핌 | 대법원 10월 27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

2026. 10. 27. · 별도 상고사건의 구속영장 발부 사실과 사유를 보도.

https://web3.newspim.com/news/view/20261027001456

5. 참여연대 그사건그검사 | 김건희 금품수수 사건 재판 경과 기록

2026. 10. 22. 현재 · 2026도15591 배당 및 2026노1712, 2025고합1756 단계별 결과를 정리한 시민단체 자료.

https://watch.peoplepower21.org/WatchPro/case/319/

참고자료

적용 법령과 판단 기준

6.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알선수재)

2025. 7. 2. 시행 · 공무원 직무에 관한 알선의 명목과 대가관계. 행위시 법률의 확인 필요.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03&lsiSeq=27…

7. 국가법령정보센터·대법원 | 2017도21248 판결(알선·대가관계의 판단)

2023. 12. 28. · 알선과 대가관계는 수수 경위·시기 등 전체 사정을 토대로 검토하며, 계약 형식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는 법리.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238887

8.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2026. 10. 2. 시행 · 상고이유 중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 및 제한적인 사실오인·양형부당 사유.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83&lsiSeq=29…

9.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2026. 10. 2. 시행 ·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법정 기준.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307&lsiSeq=29…

10.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2026. 10. 2. 시행 ·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사정.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51&lsiSeq=29…

인용된 공개 보도의 판결 설명은 판결문 전문 또는 상고이유서 원문과 같지 않습니다. 형벌법규는 각 행위 시기의 적용법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